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41

발의연월일: 2021. 3. 4.

발 의 자:이재정·김남국·김민기

김병욱 · 김영주 · 김영호

도종환 · 오영환 · 이규민

홍익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, 정부는 동 기금으로 세계백신면역연합, 감염병혁신협약, 국제의 약품구매기구의 운영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.

그러나, 올해 COVID-19로 인한 항공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출국 납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70% 이상 감소하였고, 내년 이후에도 이러 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이에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을 할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에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
- 5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자금의 차입) ①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,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
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차입금 및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워리금 상황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) ①	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	②
(財源)으로 조성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
<u><신 설></u>	5.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
	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
	의 예수금
<u><신 설></u>	제3조의2(자금의 차입) ① 외교부
	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
	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
	담으로 다른 기금, 금융기관 등
	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
	<u>다.</u>
	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
	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
	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
	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
	<u>다.</u>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	제4조(기금의 용도)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용도에 사용한다.	
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4. 차입금 및 「공공자금관리기
	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
	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
	리금 상환